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삼성증권 퇴직연금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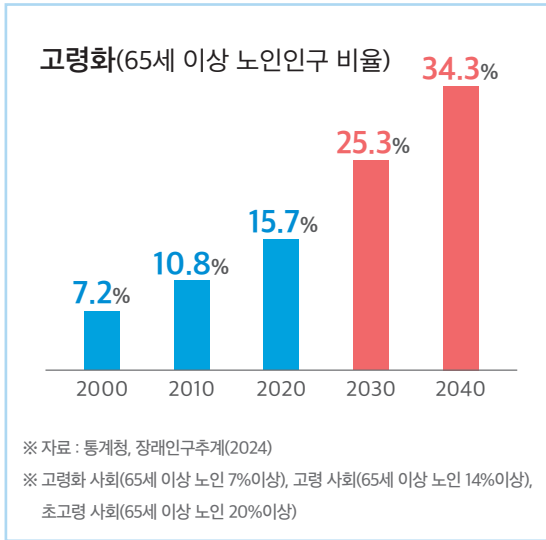
Contents

01. 노후설계의 중요성	04
02.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07
03. 퇴직급여 지급	12
04. 퇴직연금 세금	14
05. 중도인출 · 담보대출	17
06. 퇴직연금 계약이전(DB·DC)	18
07. 중단 · 폐지	18
08. 안정적 투자 원칙	19
09. 적립금 운용을 위한 다양한 상품	20
10.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23
11. 부가서비스 안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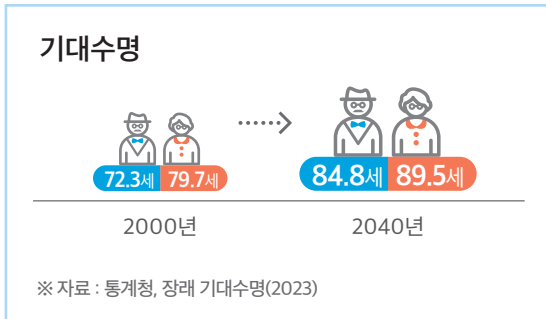
01. 노후설계의 중요성

노후준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24년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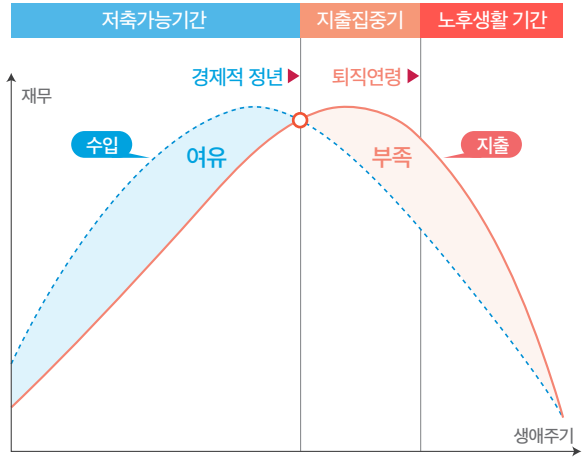


기대수명증가로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노후필요자금을 위한 노후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라이프 이슈에 맞춰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저축가능기간	지출집중기	노후생활 기간
경제적 정년 수입 여유	퇴직연령 부족	지출

사회초년기	신혼기	자녀 출산 양육기	자녀 학령기	자녀 성년기	은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독립준비 결혼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경제 생활 적응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출산 자금준비 출산 후 경제생활 적응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교육 자금 주택 구입 (확장)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준비 자녀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생활 상속준비



축적술루션 모으기



증식술루션 굴리기



분배술루션 나누기



세대이전술루션 옮기기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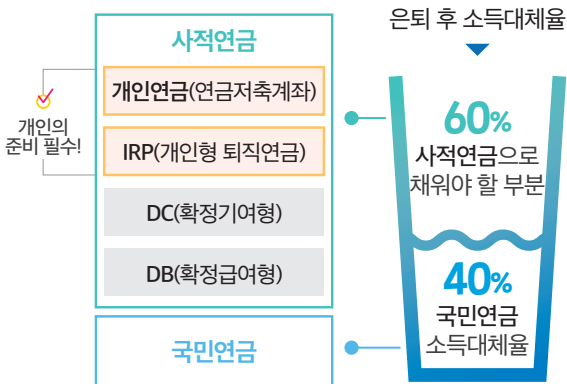
02.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3층 연금제도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적합한 노후설계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8년 40%

퇴직금도 받고,
개인추가납입도 가능한 연금계좌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회사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text{퇴직급여} = \text{퇴직시점 평균임금} * 30\text{일분} \times \text{계속근로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DC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DC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text{퇴직급여} = \Sigma(\text{매년 임금총액} * 1/12) + \text{운용손익}$$

*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납입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계좌입니다.

개인납입금

세액공제 및 노후소득을 목적으로 스스로 쌓아가는 개인연금계좌

+

퇴직급여

퇴직 or 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계좌

제도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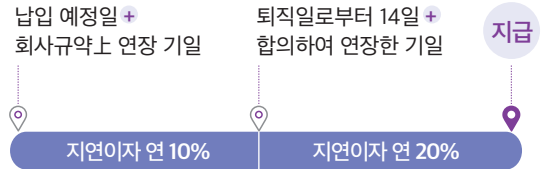
구분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별 재원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퇴직급여+개인납입금 ± 운용수익
운용책임	회사	가입자	가입자
추가납입	불가능	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퇴직급여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	불가	불가
수급요건	연금	· 퇴직 시 IRP이전 후 수령	· 만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 수령**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 미충족시 · 해지/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 가능하나,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은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만 55세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요건 배제)

DC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회사가 규약에 정해진 납입예정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부담금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지연이자 :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납입일(연장)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은행법'상 은행적용 연체금리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40% 이내)

수수료 부담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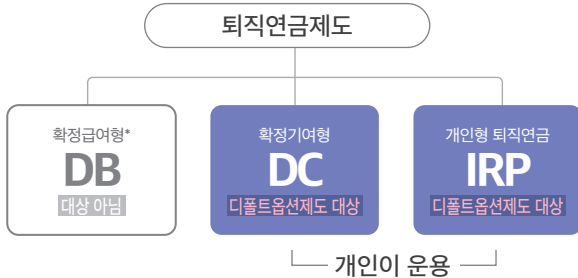
퇴직연금 수수료 =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제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DB	회사	회사
DC	회사부담금	회사
	개인납입금	규약에 따름 (개인/회사) 삼성증권은 개인납입금 수수료 면제
IRP	가입자 삼성증권은 개인납입금 수수료 면제 * 다이렉트IRP는 퇴직급여 + 개인납입금 수수료 모두 면제	

퇴직연금 DC, IRP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거나 상품 만기 후 일정 기간까지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01. 디폴트옵션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02. 디폴트옵션 상품지정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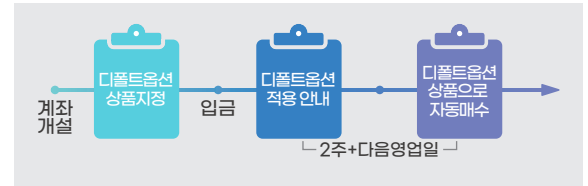
퇴직연금 DC, IRP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 하나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단, DC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03.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 프로세스

- DC/IRP 가입자가 **하나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정해두고
- ① (신규 가입자*) 상품 투자비율 없이 입금하거나
 - ② (모든 가입자) 상품 만기일 이후 4주간 운용하지 않을 경우
-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자동 매수를 통지
→ 통지 후 2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

* 본 자료의 신규 가입자란,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최초 입금을 하기 전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고객을 말합니다. (단, 신규 가입자인 경우에도 투자비율을 등록하게 되면 상품만기만 적용되게 됩니다.)

1 신규 가입자



2 모든 가입자



3 그 외의 경우 직접 매수(옵트인)

운용(지시)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이 없는 가입자는 원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하나를 직접 매수 가능

03.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며, DC 가입자는 동일한 사업자의 IRP로 현물이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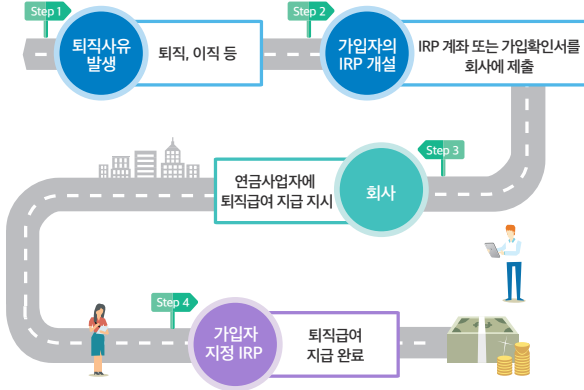


[예외]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시, 사망, 외국인 가입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 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현물이전 : DC제도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팔지(현금화) 않고,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이동 후 계속해서 운용하는 형태
 삼성증권 DC가입자는 삼성증권 IRP로 현물이전 신청 가능 (펀드, ETF, 리츠, 채권, 예금, 디폴트옵션 상품)

[참고] 실물이전 : 동일한 제도(DB→DB, DC→DC, IRP→IRP)에서 이동가능하므로 삼성증권 DC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IRP로는 실물이전 불가

퇴직급여 지급절차



- ※ 회사의 도산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 퇴직연금 적립금은 신약계약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운용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 시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부채 등과 상계 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호됨
- ※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상 지급 - 급여지급을 통지(운용관리기관) 받은 후 3영업일 이내 처리, 3영업일 초과시 지연 보상금 지급 (연10%, 상품매도기간 제외)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해 보세요.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고객님의께서 보유하신 연금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01. 사이트 안내

URL :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02. 내 연금 일괄 조회 메뉴 안내

금융감독원 사이트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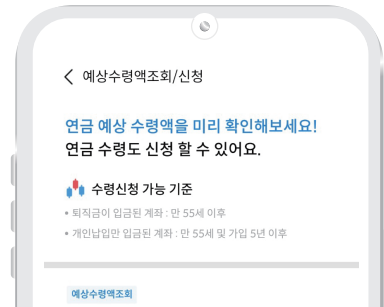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계약정보
- ② 예상연금수령액

※ 향후 납입액, 수익률, 수령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수령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mPOP 로그인 ▶ 연금/질세 ▶ MY연금 ▶ 예상수령액조회/신청



04. 퇴직연금 세금

과세체계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대상		일시금 (만55세 전 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	연금 (연금수령한도 내)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30% 감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 40% 감면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금 소득세 3.3~5.5%*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가능)
개인 납입액	세액공제O	세금 없음	
	세액공제X		

- ※ 퇴직급여는 만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가능
- ※ '실제연금 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 받은 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차로 시작
 -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일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으로 인정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IRP계좌나, DC의 경우는 최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6년차로 인정 (2013년 3월 1일 전에 DB에 납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매년 연금수령 한도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

세제 혜택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납입한도



*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02.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03.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로 수령시 퇴직급여 및 운용수익 등에 대한 세금 납부가 미루어짐

* 외국 납부한 배당소득세 제외

참고 일반계좌로 세후퇴직금 입금시 과세 이연 요건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IRP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방식

계산방법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①	
(+) 근속연수	
(×) 12(배수적용)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③	
(=) 근속 1년당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배수적용)	
(=) 산출세액	

①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환산급여	차등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20년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② 환산급여공제

③ 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5. 중도인출 · 담보대출

중도인출 · 담보대출 법정사유

퇴직연금 (DB·DC·IRP) 가입자는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도에 따라 중도인출·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담보대출
1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Y	Y
2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부담(DB·DC 가입자는 재직 중 1회 한정, IRP에서는 횡수 제한 없음)	Y	Y
3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 ¹⁾ 의 12.5%를 초과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	Y	Y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Y	Y
5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부담	N	Y
6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N	Y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Y	Y
8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Y	N

1) 담보대출 및 IRP는 연간 임금총액 조건 무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에 해당하는 경우

※ DB는 중도인출 불가

※ 담보대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 수급액 변경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음

중도인출 신청 및 지급 절차



법정사유 확인

요건 심사, 상품 매도 후
인출금 지급

06. 퇴직연금 계약이전

- 01 **계약이전 검토 및 계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노동자에게 신고수리
※ IRP는 해당사항 없음
- 02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
- 0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 됨
- 0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 계약이전 신청 후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전이 지연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
-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처리, 초과 시 지연보상금 지급(연10%, 상품매도기간 제외)

07. 중단·폐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사가 장관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중단을 명할 수 있음

- 추후 제도운영 재개 가능
- 미납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지급, 적립금운용 및 통지, 가입자교육 등은 계속적으로 수행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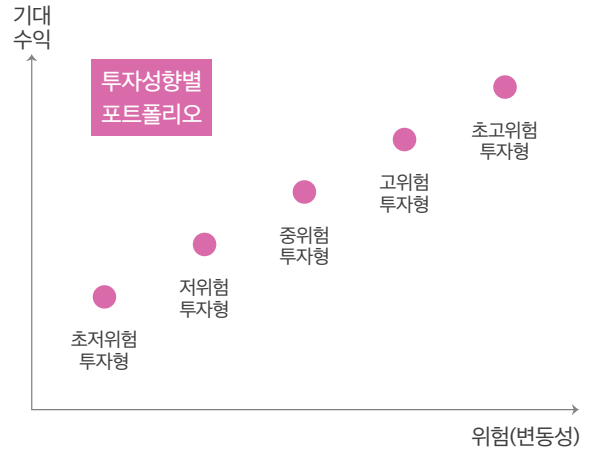
근로자대표 동의로 제도 폐지

-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의 IRP로 이전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상하고 손실보상 방법은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음

08. 안정적 투자 원칙

「기대수익이 높아지면 위험(변동성)이 높아지고, 위험(변동성)이 낮아지면 기대수익이 낮아지고,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자산구성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각기 다른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고, 위험은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분산투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개별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서로 다른 위험을 분산



장기투자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극복할 수 있고 투자기간이 길어질 수록 원금손실의 위험이 낮아짐



적립식 투자

투자시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줄임

09. 적립금 운용을 위한 다양한 상품

퇴직연금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채무증권
수익구조	이표/매매차익
투자위험	가격변동 위험, 부도위험
보수/수수료	종목에 따라 상이
중도해지(매도)	매도제한없음
주요 상품	국고채 및 회사채
구분	지분증권
수익구조	매매차익/배당수익
투자위험	원금손실 위험
보수/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0.0036396% 발생
중도해지(매도)	매도제한없음
주요 상품	리츠, 인프라투융자회사
구분	수익증권
수익구조	운용수익
투자위험	원금손실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금리변동위험, 환위험 등 상품에 따라 상이(투자설명서 참고)
보수/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선취·후취 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중도해지(매도)	매도제한 및 중도해지조건 상품별 상이(투자설명서 참고)
주요 상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구분	파생결합증권
수익구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사전에 결정한 조건에 따른 수익
투자위험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위험, 중도상환위험 등 기초자산 및 구조에 따라 상이(투자설명서 참고)
보수/수수료	-
중도해지(매도)	매도제한 및 중도해지조건 상품별 상이(투자설명서 참고)
주요 상품	ELS, DLS, ELB, DLB

※ 상품 가입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에 따라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 받을 수 있으며 투자권유 시 직원에게 상품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 예금

은행 / 증권금융 정기예금

시중은행 및 한국증권금융에서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율을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

가입한도	가입금액 제한 없음
예금자보호	퇴직연금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은행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적용

저축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에서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율을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

가입한도	은행별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예금자보호	퇴직연금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은행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적용

우체국 정기예금

우정사업본부에서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율을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

가입한도	가입금액 제한 없음
예금자보호	정부기관에서 보증(예금자보호 적용대상 아님)

■ ELB/DLB

원리금 보장형 ELB/DLB

신용도가 높은 우량 증권사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

가입조건	가입한 DC/IRP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상품은 투자 불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은 투자 가능) *퇴직연금감독규정 11조/12조
------	---

■ 채권

국고채

국채, 물가채, 국민주택 채권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투자한도	총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	-------------------

실적배당형

■ 펀드

펀드 유형별 투자한도

유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투자한도	100%	100%	70%	70%

* 투기등급채권 비중이 30% 초과하는 경우 투자한도 70% 적용

** 주식비중이 40% 초과하는 경우 투자한도 70% 적용

ETF

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에 상장 시켜놓은 상품

* 퇴직연금 감축규정상 투자 불가능 종목 : 레버리지/인버스/위험평가액 40% 초과 종목은 제외

TDF

예상 은퇴시점을 설정하여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펀드

투자한도 적격* TDF는 총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주식비중이 80%이하이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주식비중이 40%이하인 펀드

[펀드 위험등급]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	매우 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 ELB

원금 보장형 ELB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원금보장 상품

가입조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ELB/DLB 상품의 매수 한산 금액이 잔고 평가 금액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채권

지방채/특수채/회사채

지방정부, 특수법인, 일반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투자한도	총 적립금의 70% 투자 가능 단, 동일법인/동일 지자체 발행 30%, 동일 계열기업군 40% 한도
------	--

10.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퇴직연금 잔고/거래확인, 상품매매, 가입자 추가납입 등
삼성증권 모바일 mPOP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삼성증권 mPOP (스마트폰)



I 삼성증권 홈페이지



I 로그인/ID등록

■ DC고객 온라인 거래 등록하기

mPOP	홈페이지
① 연금/절세	① 고객센터
② 퇴직연금	② ID등록/찾기
③ DC가입하기/거래등록	③ 퇴직연금회원가입(개인)

“

보유 ID로 로그인 했는데,
DC/IRP계좌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서비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서비스 등록하기

mPOP	홈페이지
① 고객센터	① 온라인지점
② 신청/변경	② 부가서비스 등록/변경
③ 보유계좌관리	③ 온라인 서비스 사용 계좌 등록
④ 온라인 서비스 계좌 등록	

계좌선택 ▶ 비밀번호 등록 ▶ 본인인증 ▶ 서비스등록 완료!

I 온라인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 동영상으로 온라인 가입자교육을 제공합니다.

[mPOP 로그인](#) ▶ [연금/절세](#) ▶ [MY연금](#)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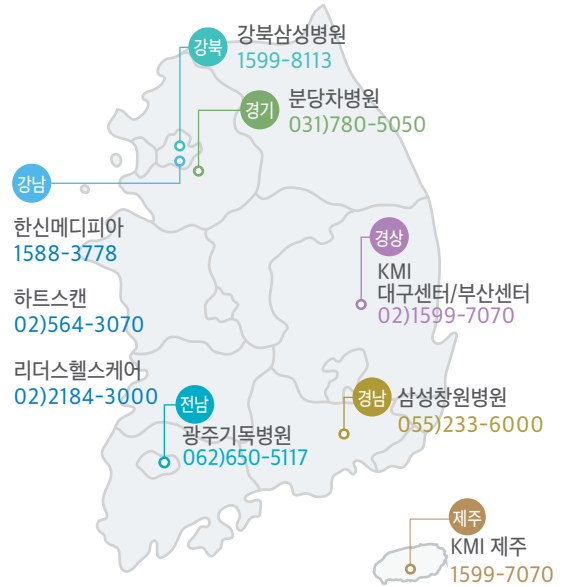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금/절세](#)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 [나의 강의실](#)

온라인 서비스 및 퇴직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1644-5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부가서비스 안내

건강검진 특별 가격 우대

- ✓ 삼성증권 연금 고객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 삼성 임직원 제휴 건강검진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우수고객 금융서비스

0% 삼성증권 및 타금융기관 영업시간 내 CD/ATM기 CMA 출금 수수료 면제

(단, 금융기관 영업점의 타사 제휴 자동화기기의 경우 수수료 부과)

⊕ 전국 CU편의점 ATM 현금 출금 수수료 무료
(CMA체크/신용카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온라인 이체 수수료 면제 (홈페이지, HTS, mPOP)

연금고객 전용 복리후생관 혜택가득 Mall

☑ 여행, 숙박, 복지샵, 서점 등 연금 고객 특화 복지몰

여행/레저 할인

전국 200여개 관광지 상품 판매
소셜 대비 최대 20% 할인

국내/해외여행, 렌터카 비교견적,
입장권 당일 구매/사용가능
(일부 상품 제외)

숙박 할인

국내 숙박 최저가 예약
가격비교까지 한눈에

한눈에 비교 검색하여
저렴하게 호텔/콘도/펜션/
게스트하우스 예약

복지 SHOP

5대 온라인 쇼핑몰 대비
최저가 보상제도

WOW특가, 선착순공동구매,
SUPER 7 DAYS
(최저가)

온라인 서점/교육

온라인 서점 할인/ 적립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

온라인서점 가격비교,
e-Book 단독특가
에듀월, 시원스쿨 등

PC/ 모바일 접속 samsungpop.ezwel.com

↳ 혜택가득 Mall 접속 > 회원가입 회사명 “**삼성증권**” 입력

* 모바일 App “이지웰(현대이지웰)” 설치 가능

호텔 신라 면세점

온라인/오프라인
신라멤버십 회원 등급
골프플러스 업그레이드



※ 본 부가서비스는 삼성증권과 협약을 체결한 각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